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1인

1.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14:00~16:2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7월 20일)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1) : 정재흠
- 불참 임원
 - 이사(0) : 없음
 - 감사(1) : 안상우
- 배석 교직원
 - 법인(3)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승현, 과장 임지윤
 - 학교(2) : 기획경영본부장 백상미, 교무부처장 이현욱

4. 의안

- 제1호. 개방 감사 선임 건
- 제2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 제4호. 교직원 징계 건
- 제5호. 기타 안건
 - 1) 2026.11.18.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현 이사 후임의 임기 결정
 - 2) 정관 변경에 따른 임원 임기 변경의 건
 - 3)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류원렬 교목실장·신학과 교수(이하 '교목실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393장을 다 같이 부르고, 교목실장이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144편 1~15절을 봉독하고 '신앙의 이글루'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교목실장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감사 재적인원 1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 6. 25.(목)에 개최된 제255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장이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박승현 이사의 재청으로 제255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대학 관계자 이석)

(정재흠 감사 이석)

[의안] 제1호. 개방 감사 선임의 건 심의

이사장이 '제1호. 개방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개방감사추천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사립학교법상 명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며, 개방감사 역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개방이사와 달리 개방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1인 단수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방감사의 전문 분야를 먼저 논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이사회 구성상 법률전문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를 개방감사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부분의 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다. 또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이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 측 추천위원 3명과 법인 측 추천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천 과정의 균형을 위해 대학 측과 법인 측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이후 후보자 추천을 거쳐 2026년 7월 20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다. 법인이 추천한 후보와 대학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찬성4표, 반대1표로 변호사 김정기를 개방감사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1호. 개방 감사 선임 건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 김정기 개방 감사 선임 (2026. 9. 29. ~ 2029. 9. 28.)

[의안] 제2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이사장이 '제2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먼저 정관 개정 심의 안건 '1) 「정관」 제19조 개정(안)'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에서 설명하고, '2) 「정관」 제82조 개정(안)'은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의 「직제 규정」에서 백상미 기획경영본부장(이하 '본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김승현 실장('이하 실장')에게 '1) 「정관」 제82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실장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19조의 명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한 정관을 만들기 위하여, 제19조(임원의 임기) 제①항은 기존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하여 각 임기를 3년, 4년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기에 따른 이사의 수를 표기하여 각 임기를 3년(4명), 4년(5명)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임을 설명하고, “제③항 궐위로 인하여 선임되는 후임 임원에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기 전부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고 그 임기는 제①항 각호에서 정한 임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라는 문구 중 뒷부분을 삭제하여 “제③항 궐위로 인하여 선임되는 후임 임원에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기 전부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기를 부여한다.”로 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다. 그리고 부칙 제2조 하단의 “개방이사 3명의 경우에는 임기 3년 1명, 4년 2인으로 한다” 표현은 어법상 사람을 먼저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하며, “개방이사 3인의 임기는 1인은 3년, 2인은 4년으로 한다”로 문장의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사장이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선권수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2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승인제청

1) 「정관」 제19조 개정(안) : 원안에 선권수 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하여 각 임기를 3년, 4년으로 따로 정할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하여 각 임기를 <u>3년(4명), 4년(5명)</u> 으로

수 있다.<개정 2026.05.28.> 1. 이사 4년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개정 2006.12.7., 2012.7.23.> ② (현행과 같음) ③ 궐위로 인하여 선임되는 후임 임원에 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기 전부에 해 당하는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며, <u>그 임기 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임기의 범위 내 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u><신설 2026.05.28.>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05.28., 2026.00.00.> 1. 이사 4년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개정 2006.12.7., 2012.7.23.> ② (현행과 같음) ③ 궐위로 인하여 선임되는 후임 임원에 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기 전부에 해 당하는 새로운 임기를 부여한다. <u>그 임기 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임기의 범위 내 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u><개정 2026.05.28., 2026.00.00.>
부칙 <2026.05.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기 분산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시행 후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되는 이사 9인(개방이사 3인 포함)에 대하여 이사회는 의결로 임기를 3년, 4년 으로 분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 배분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완료한 후 이 사회 선임 의결 시에 함께 결정한다.	부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기 분산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시행 후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되는 이사9인(개방이사 3인 포함)에 대하여 이사회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임기 3년인 이사 4인과 임기 4년인 이사 5인으로 배분하여 선임한다. 이 경 우 개방이사 3인의 임기는 1인은 3년, 2 인은 4년으로 한다.<개정2026.00.00.> ② 현행과 같음

(대학 관계자 배석)

[의안]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승인제청 심의' 안건과 '2) 「정관」 제82조 개정 건'도 같
이 상정하며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본부장이 「정관」 제82조 개정은 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
존의 라이즈(RISE)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앵커(ANCHOR) 사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개편되었으며, 2026년 6월 15일 제2차 경기도 앵커위원회에서 해당 명칭 변
경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설명하다.

본부장이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대학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
라고 설명하며, 「정관」 제82조의 변경 전·후 내용은 사업 명칭 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명을 수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며, 이어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1) 「직제규정」 개정 사항에 대
하여 설명하다. 직제규정 개정 역시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부서명

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마무리하며, 이어서 2)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규정」(수정발의)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본부장이 본 안건은 평택대학교 2.1(이점일) 환경연구소 신설에 따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28일 이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수정한 후 재상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본부장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정의 명칭을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규정」에서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하다.

본부장이 제2조 목적 규정에는 ESG 가치를 반영하여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보완하였고, 제2장 조직 및 임원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제3장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르도록 정리하고, 연구소장의 운영위원회 추천 절차는 유지하였고, 제3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명칭을 통일하여 정비하였고, 제4장 지속가능성 정책자문단에서는 장의 명칭과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정책자문단의 기능도 일부 수정하고, 제5장 재정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연구소가 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교비회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보칙에서도 규정 전반의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였다고 설명하다.

연구소 명칭이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2.1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 충돌 등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다.

본부장이 대학은 해당 명칭 사용에 따른 이해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명칭은 이미 2025년 5월 22일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과거 이사장이 '2.1지속가능재단' 이사장과 평택대학교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다. 이에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명칭에 '2.1'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도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본부장이 당시 제기된 이해충돌 논의는 연구소 명칭 자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2.1지속가능재단과 체결한 MOA(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다.

현재 연구소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이해 충돌 문제는 없다는 의미인지 재차 확인하자, 본부장이 현재 연구소 명칭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다.

환경연구소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본부장이 추후 환경연구소와 관련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규정상 재정 항목에 '교내 연구비 및 관리운영비'가 명시되어 있어 자칫 환경연구소가 교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교내 연구소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의 본래 취지인 연구성과 창출과 대학 기여 기능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환경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연구소의 역할과 대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연구운영관리지침 등의 형태로 마련하여 함께 제시한다면 연구소 운영의 취지와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자, 본부장이 추가 경정예산 관련 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할 때 환경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함께 포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당초 환경연구소는 수소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며, 수소에너지가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분야라는 점에서 연구소 설립에 적극 찬성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관련 학과와 연계할 경우 대학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며, 현재 규정의 직제와 업무 범위를 보면 당초 취지보다 조직과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미대난도'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대학 당국과 부설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현재의 조직 규모와 기능만 보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소의 조직과 사업이 계속 확대될 경우 향후 대학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다. 따라서 연구소가 대학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연구소의 조직 확대와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대 및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향후 환경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자, 본부장이 잘 알겠다고 답변하다.

이사장이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박승현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규정 제·개정(안) 승인 제청

- 1) 「정관」 제82조 개정(안) : 원안 승인
- 2)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 승인
- 3)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 : 원안 승인

○ 요청 사항

• 「2.1(이점일) 평택대학교 환경연구소 규정」

- 추가경정예산 및 환경연구소 중장기 발전 전략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

[의안] 제4호. 교직원 징계 건 심의

(대학 관계자 이석)

(정회 15:45) 이사장이 정회를 선포하다.

(속개 16:00) 이사장이 속개를 선포하다.

[의안] 제5호. 기타 안건

2)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5호. 기타 안건'의 '2)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로, '3)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제4호. 교직원 징계 건', '제5호. 기타 안건의 1) 2026.11.18.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현 이사 후임의 임기 결정' 심의는 '비공개', '제1호, 제2호, 제3호'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박승현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5호. 기타 안건

2)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

3)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회의록 비공개 범위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 제4호. 교직원 징계 건, 5호. 2026.11.18.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현 이사 후임의 임기 결정 : 비공개
- 제1호, 제2호, 제3호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9. 보고 사항

1) 2026-2학기 신규 비전임교원 채용계획 보고

이사장이 보고 사항 '제1호. 2026-2학기 신규 비전임교원 채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교무부

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부처장이 '제1호. 2026-2학기 신규 비전임교원 채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다. 이사장이 보고 사항에 대해 참석 이사들에게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보고 사항 안건을 종결하다.

2) 총장의 연구 및 전문성 강화 보고

이사장이 이동현 총장이 이사장에게 구두(문자)로 보고한 「총장의 연구 및 전문성 강화보고」를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학교 정관 등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의 직무 수행에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므로 총장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다.

10.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6시 20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12	11	10	9	8
----	----	----	---	---

12	11	10	9	8
----	----	----	---	---

2026. 7. 28.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 계 안

이 사 김 병 환

김병환

이 사 김 영 미

김영미

이 사 김 우 영

김우영

이 사 김 지 훈

김지훈

이 사 박 승 현

박승현

이 사 선 권 수

선권수

이 사 이 대 화

이대화

이 사 이 자 희

이자희

감 사 정 재 흠

정재흠

감 사 안 상 우